

# Muan Web Contents

2021년 09월 28일 22시 54분



# 목차

목차	2
취등록세	3
취득세/등록세 신고	3
취득세	3
등록세	3
취등록세/공채매입비율	3
차량가액기준 비율	3
채권 할인매도	4
조세감면차량	4
대상자	4
감면비율	4
감면요건	5
추징요건	5

자동차 과태료	건설기계과태료	이륜자동차과태료	압류등록/해제	취등록세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

## 취득세/등록세 신고

### 취득세

- 자동차,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,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상(매매, 경락등) 또는 무상(증여, 상속등)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%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
- 과세표준
 

-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함
  - 중고차량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함 (예외 :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.)
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
  - 공매, 경매시 취득한 가액
  - 수입, 법인장부.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
- 시가표준액이란 :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 · 정원 · 적재정량 · 제조연도별 제도가격 및 거래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
- 취득의 시기
 

- 계약상의 잔금지급일(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)
  - 사실상 잔금지급일 (예외 - 등기,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)
  - 무상승계취득(상속, 증여등) : 증여, 상속등 개시일이 취득일

### 등록세

-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(등재포함)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.
- 납세의무자 :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
- 과세표준 : 등기.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(예외)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

## 취등록세/공채매입비율

### 차량가액기준 비율

구분	차종	비영업용			영업용		
		등록세	취득세	공채율	등록세	취득세	공채율
	경승용차	0%	0%	0%	0%	0%	0%
	배기량 1500cc미만	5%	2%	6%	2%	2%	2%

구분 신규등록	승용	배기량 2000cc미만 차종	5%	비영업용	8%	2%	영업용	2%			
		배기량 2000cc이상	등록세 5%	취득세	2%	공채율	12%	등록세	2%	취득세	2%
	경승합 · 경화물		1.5%	1%	0%	1.5%	1%	0%			
	승합 · 화물		3%	2%	3%	2%	2%	1%			
이전 등록	경승용차		0%	0%	0%	0%	0%	0%			
	승용	배기량 1500cc미만	5%	2%	3%	2%	2%	1%			
		배기량 2000cc미만	5%	2%	4%	2%	2%	1%			
		배기량 2000cc이상	5%	2%	6%	2%	2%	1%			
	경승합 · 경화물		1.5%	1%	0%	1.5%	1%	0%			
	승합 · 화물		3%	2%	1.5%	2%	2%	0.5%			
저당	설정등(저당금액의비율)		0.2%	-	-	0.2%	-	-			
기타	변경등록등		7,500원	-	-	7,500원	-	-			

■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

- 신규, 소유권이전등 : 영업용 20/1,000 , 비영업용 30/1,000
- 저당권설정 : 2/1,000
- 기타등록(주소이전등) : 5,000원
- 교육세 : 등록세액의 20% , 농특세 : 취득세액의 10%

■ 참고사항

-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
- 면 세 점 : 취득가액 50만원이하

## 채권 할인매도

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,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에 고 시된 비율로 매도를하는 과정을 할인매도라 합니다.

## 조세감면차량

### 대상자

- 국가유공자 : 1급 - 7급
- 지체장애인등 : 1급 - 3급
- 시각장애인 : 1급 - 4급

### 감면비율

구분	한도	취득세	등록세	취득	주비비율
----	----	-----	-----	----	------

(<http://www.muang.go.kr>)

구분	차종	취득세	등록세	세권채권	증빙서류
	2000cc미만	과세	과세	면제	
국가유공자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00cc이상 승용차</li> <li>7-10인승 승용차</li> <li>1톤미만 화물자동차</li> <li>15인이하 승합자동차</li> </ul>	감면	감면	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공자 상이 등급증빙서류</li> <li>장애인증빙서류</li> </ul>
사립학교 교육용	실험 · 실습용차량	감면	감면	면제	인 · 허가 서류
시내버스	시내 · 외버스	과세	0.2%	2.0%	인 · 허가 서류
매매업자 매입용	중고자동차	감면	1%	면제	인 · 허가 서류
	중고 건설기계	농특세부과 0.2%	1%	면제	인 · 허가 서류
	중고 건설기계	감면	1%	면제	인 · 허가 서류

## 감면요건

-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
- 공동소유감면 한계 :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, 자매 가능함
- 공통조건 :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

## 추징요건

-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시 면제된 세금전액을 추징함

- 예외)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취소, 폐차

- 추징대상 : 취 · 등록세, 자동차세등.

MUAN

# Web Contents

 무안군